

나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구분	임산물생산단지 규모화	
	공모사업	소액사업
사업대상자	입업후계자, 독립가, 신지식농업인(입업분해), 생산자단체	입업인 등, 생산자단체
대상자 선정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보조비율	국고40% 지방비20% 융자-, 자부담40%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 자부담20%
신청기간	전년도 4~6월	전년도 1~2월 중
사업 목적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 시설의 품목별 집산화·현대화를 지원하여 임가 경쟁력 강화	작업로, 울타리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으로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
지원 내용	<p>종자·종근 구입, 산지 묘포장 조성, 임내정리 및 식재, 관정·관수 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시설, 작업로, 모노레일, 액비저장시설, 임산물 저장·건조시설, 비닐하우스, 온실, 자동화시설, 기계장비, 숲가꾸기(숲아베기, 천연림보육, 풀베기, 덩굴제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수집 등) 등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 참조</p> <p>* 해당 보조사업으로 식재한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풀베기, 가지치기 등 관리비용은 지원 불가</p> <p>* 사업계획에 숲가꾸기 포함시 숲가꾸기 사업 준공 후 5년(어린나무가꾸기의 경우 3년) 경과하지 않은 사업지에는 숲가꾸기 지원 불가</p> <p>※ 숲가꾸기가 필요한 사업지는 가급적 사업시행 전 ‘산림자원육성·관리(농특)’ 단위사업 예산의 ‘숲가꾸기’과 연계하여 선행하고, 부득이 한 경우 본 사업으로 숲가꾸기를 실행하거나, 풀베기 등 가벼운 사업 위주 지원</p>	
지원 한도 (총사업비 기준)	<p>(노지재배) 1억원 ~ 5억원 이하</p> <p>(시설재배) 1억원 ~ 7억원 이하</p> <p>* 2년간 분할지원 가능</p> <p>* 설계·감리비(8% 이하), 기반 조성비(40% 이상), 식재인건비(10% 이하), 종자·묘목구입비(20% 이하), 숲가꾸기(20% 이하) 기타 부대비(7% 이하) 등으로 구성</p> <p>*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p>	<p>1억원 미만</p> <p>* 단일사업으로 운영 가능(종자·종묘 구입은 단일사업 불가)</p> <p>* 종자·종묘, 모노레일 등에 대하여 감리가능</p> <p>* 숲가꾸기는 전체 사업비의 20% 이하</p>

기타	- 공모사업 지원조건(품목별 면적기준)							
	<table border="1"> <thead> <tr> <th>품목의 종류</th> <th>세 부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td> <td>25,000㎡/개소 이상</td> </tr> <tr> <td>산림버섯류</td> <td>(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td> </tr> <tr> <td>관상산림식물류</td> <td>(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td> </tr> </tbody> </table>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25,000㎡/개소 이상	산림버섯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품목의 종류	세 부 내 용							
약용류·약초류·산나물류·수실류·수목부산물류	25,000㎡/개소 이상							
산림버섯류	(노지 ; 송이산가꾸기 포함) 3,300㎡/개소 이상 (시설 : 재배시설, 톱밥배지 생산시설) 1,650㎡/개소 이상							
관상산림식물류	(노지) 10,000㎡/개소 이상, (시설) 1,000㎡/개소 이상							
	<p>※ 1개 단지 규모가 지정된 면적 미만이라 하더라도 소득생산의 효율성이 인정되는 품목은 지자체에서 판단(내부결재 필요)하여 사업 지원 가능</p> <p>※ 2개 이상의 종류를 동시에 지원 받고자 할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면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p> <p>(예시) 약용류·버섯류 생산시설을 동시에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면적이 약용류 25,000㎡/개소 이상, 버섯류 3,300㎡/개소 이상이어야 함</p> <p>-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에 따른 반출금지 구역 내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의 사업장 외 이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본 사업지 내, 연결지에서 산림사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산림병해충 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행</p> <p>* 파쇄, 훈증, 소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사업비 중 숲가꾸기 사업 30%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p>							

【 공모사업 유의사항 】

- (사업대상) '22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
 - * '21년 시행지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22년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코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승인 후 추진 가능
- (사업비율) 사업성격 및 지역특성에 따라 비율 조정 가능(객관적 자료 제시)
 - * 단,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공모)의 숲가꾸기 사업 비율은 심의 당시 기준 적용
 - * 자체 생산자재 사용 시 총 사업비에서 제외
 - * 산림소득 공모사업계획 변경 승인기준(2020.12.24.)에 따라 처리
 - * 토목 공사비 : 기반 조성비의 10% 이하로 가능하며, 토목사업비 중 부지조성(절토, 성토 등)은 지원 제외(시설 기반정비 및 터파기 등은 가능)
 - * 기타 부대비 : 사업 타당성 평가, 컨설팅, 정산보고서 검증 등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집행이 가능함. 다만, 인·허가 및 측량 비용 등은 지원 안됨
 - *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은 감리 의무화
- (기타) 산림소득지원사업 표준품셈(안)을 참고·활용하여 사업 지원
 - * 산림청 누리집 > 정보공개 > 통합자료실 > '품셈' 검색

○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공종별 지원 조건 및 단가(공모·소액)

- 지자체는 세부사업별 지원단가가 해당지역 실정에 적합한지 반드시 검토한 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조정하여 적용 시행(지원한도는 조정불가)
 - * 기준단가보다 초과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단가 산출 근거서류(농협 등 구매단가, 종합물가정보, 원가계산서 등 세무서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함) 제시 시 단가 조정 가능
- 구조물 등 시설사업은 직접 시공은 지양하고 가급적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서 시공(☎버섯재배시설, 톱밥배지생산시설, 관정·관수시설, 웹스 및 CCTV, 모노레일, 저장·건조시설 등)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인건비	2022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대한건설협회) * 작업여건에 따라 벌목 또는 보통인부임 적용 * 다른 기준 또는 금액을 달리 할 경우 그에 대한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 * 자가시공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8조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 산지정리, 제조작업, 모목식재, 작업로시설, 활엽관목 제거, 숲아베기 등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 제58조제1항제6호 :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6분의 1 한도 내에서 직접 노무비 및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해당하는 부분(사업 대상자 및 직계 존·비속 중 1인에 한함)을 지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사업시행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자료 나. 계약당사자로부터 직접노무에 대한 용역비를 받은 경우 직접노무비 용역비에 관련한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	
종자·묘목대	실단비를 적용하되, 2개 이상 견적서 기준 *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종자업’을 등록한 자이거나, 같은법 제38조에 따라 ‘생산·수입판매 신고’를 한 자에게서 구입 * 산양삼 종자·종묘는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합격한 종자 또는 종묘에 한정하며, 20만원/kg 이하로 지원 ※다만,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시 파종·식재 하고자 하는 토양에 대한 생산적합성조사가 완료되어야 함 * 조경수 묘목은 조경수로 수요가 있어 나라장터 또는 물가정보 등에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규격 미만으로 한함	*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경우, 1인당 5건까지 산양삼생산 과정확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표고버섯 자목 구입	(지원 요건) - 원목표고 재배 경력이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인 자로서 최소 330㎡(100평) 이상의 표고재배시설에서 표고를 재배하고 있거나, 노지에서 1,000본 이상의 표고목으로 표고를 재배하고 있는 자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지원 한도) - 공모사업 : 총사업비 중 20% 이하 지원 - 소액사업 : 3천만원 이하 (지원 단가) - 분당 금액 : 5,000원(W 12cm × L 120cm) * 현장여건에 따라 실거래가 적용 가능 (지원 수량) - 면적당 본수 : 1,000본/330㎡ * 규모에 맞는 신청 확인을 위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업	* 3년 1회 지원가능 (예) '21년 지원받았다면, '24년 지원 가능 ('23년에 사업 신청) *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산림청 고시 제2020-58호)에서 표고원목 실거래가의 평균가격 적용 (산림분야 자연재)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을 제출하여 적정성(수량 및 구입처의 적정성, 증빙서류 제출 가능여부 등)을 지자체로부터 인정 받은 경우는 먼저 구입하고, 교부결정 이후, 증빙서류 등의 적정성 확인 후 교부·정산가능 단, 자목 구입비 2천만원 이하만 수의계약 가능	
송이산 가꾸기	‘송이산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사업실행기준단가 적용	* ‘송이산 가꾸기사업 실시요령’ 지침참조
산림버섯 재배시설 (비닐하우스, 냉난방시설 등)	(지원 요건) - 최소 330㎡(100평)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 산림버섯 재배·생산 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사업시행 전까지 이수(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교육 이수자 제외) - 공모사업에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는 공모사업 지침에 의거 지원 (지원 내용) - 비닐 재배사, 냉난방기, 자동화시설 등 신설 - 기존 비닐 재배사를 판넬형 이상으로 재배사 개·보수 및 증·개축 * 판넬형 이상 신축은 불가하고, 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가능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 ‘표고재배시설 표준 모델 시공지침’ 활용 - 인·비등 한화 활용 - 산림청 누리집>정보 공개>통합자료실> ‘표준모델’검색
톱밥배지 생산시설 (혼합기, 입봉기, 실균기, 냉각기 등) * 톱밥배지를 생산하여 판매 또는 자가소비하기위한시설	(지원 요건) - 표고재배경력 5년 이상인 ‘임업인 등 또는 생산자단체’로서 톱밥배지 생산관련 8시간 이상 집합교육(산림조합중앙회 산림버섯연구센터, 임업인종합연수원, 관련 대학 등)을 받은 자 - 생산자단체는 신청일 기준으로 구성원 중 최소 2명 이상이 표고재배경력이 5년 이상이면서 8시간 이상 톱밥배지 생산관련 집합교육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야 함 - 톱밥배지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자산업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종자업’ 등록하고, ‘생산·수입판매 신고’ 또는 통상실시 등을 한 자에 한하여 지원(자가소비는 제외) (지원 내용) - 배지혼합기, 배지처리기(건조장치 포함), 탈병기,	* 배지생산시설 없는 자가 배양시설만 설치하는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입봉기, 살(멸)균기, 실균대차, 종균기, 위생과 관련된 기기, 배양시설 등 * 건축물 신축은 지원 불가(증축은 기존시설 면적의 20% 범위 내 지원), 자동화 기기·시설 지원 가능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것은 지원 불가 * 배양시설의 규모는 배지 생산시설의 규모를 고려하여 판단
관수·관정시설 (관상산림 식물류)	(지원 요건) - 재배포지 내 또는 연접지역에 위치하여 관상산림식물류 재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함 - 1일 양수량 30톤 이상, 수중모터 2HP 이상 (지원 단가) -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20백만원/개소	* ‘조경수 관정시설 지원사업 실행요령’ 지침참조 * 재배면적이 1ha 이상 인 자, 자가 포지를 이용하여 관상산림 식물류 생산을 많이 하는 자를 우선 선정 * 관수·관정시설 모두 포함한 단가
관수·관정시설 (기타 품목)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스프링클러 : 6,000천원/0.5ha - 점적 : 4,500천원/0.5ha - 관정(6인치, 일반형) : 9,400천원/공	* 지원한도에 물탱크 가격 포함되어 있음 * 전기시설 등 기타 부대시설은 자부담으로 설치
대추비가림 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당 20천원 이내	
덩굴류 유인시설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냉해예방시설 (방상팬, 미세살수장치 등)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달 단가 우선 적용)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감시시설 (보호울타리, 감시카메라 등)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전기 울타리 : 1,700천원/0.5ha - 철조망 : 7,400천원/0.5ha	*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펜스 설치 지원 가능
모노레일	(지원 요건)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면적 5ha 이상인 자 * 관광·체험을 목적으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려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기준 30백만원(견인차, 대차, 주행레일 포함)	
하우스 시설 (관상산림식물)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하우스 시설 : 250천원/3.3㎡ - 유리 온실 : 800천원/3.3㎡ - 아크릴 시설 : 1,000천원/3.3㎡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지원 요건) - 저장시설 및 건조시설의 시설규모(연면적) 총합이 100㎡ 이하로, 단기소득 임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을 기준으로 하되, 조달 단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 (조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 총사업비 100백만원 미만	

구 분	지원조건 및 지원단가(총사업비 기준)	비고
조경수 컨테이너 생산시설	(지원 단가) 사업계획에 의한 실소요액 기준으로 하되 조달단 가 또는 2개 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단가 적용(조 달 단가 우선 적용) (지원 한도) 상토는 공모사업에 한해 최초 1회만 지원하되, 총사업비의 7%이내 지원	* '조경수 컨테이너 재배 시설 지원사업' 지침 참조
작업로 시설 (신규)	(지원 요건) 노퍽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별 표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 설치조건'을 따르되, 산사태 및 작업능률 등을 감안하여 토공사 및 안전시설 위주로 시설하고 노퍽을 최소화할 것 * 콘크리트 포장은 지원대상 아님 (지원 한도) km당 15백만원 이내	* '산림소득작물 생산을 위한 작업로 시설지원' 참조